

본청에 두는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(제9조제1항 관련)

구분	부교육감	실장	국장	과장·담당관
서울특별시 교육청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	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	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	장학관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
그 밖의 시·도 교육청	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		장학관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

비고

1. 위 표의 과장·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1명의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(補)할 수 있으며, 과·담당관 단위의 기획업무 기구의 장 밑에는 1명(경기도 교육청은 2명)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1의2. 위 표의 과장·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의 교육행정체제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담당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, 교육행정체제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밑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4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2. 위 표의 과장·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의 과장·담당관 중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3. 위 표의 과장·담당관 밑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가.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: 4명 이내

나. 경기도 교육청: 5명 이내

다. 그 밖의 시·도 교육청: 2명 이내

4.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(이하 “감사기구”라 한다)는 과

- 담당관으로 두고, 그 밑에는 1명(경기도 교육청은 2명)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5. 제4호 및 위 표의 과장·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은 3급 상당 개방형 직위로, 그 밖의 시·도 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